

「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에 따라
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위원
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요

1. 추천인원 : 1~3명
 2. 위원임기 : 2년, 연임가능
- ※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지급 예정

나. 위원회 기능 :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수행

1.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위원 추천

1. 추천기한 : 2026. 8. 11.(화) 17:00까지
2. 제 출 :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
3. 제출방법 : 공문, 이메일 또는 우편(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□이메일 : sejong@assembly.go.kr
□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소통관 415호
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(우 07233)

4. 제출서류

□ 【붙임2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서

라. 기타사항

1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2. 추천서 작성 시 **작성요령**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이메일로 제출 시 **서명 날인 후 스캔**하여 첨부하여 주시고, 공문 제출 시 **비공개**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선정결과는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드릴 예정입니다.
※ 연락불능(3회 이상 안 받을 시) 시 차순위 위원 중 선정
5. 등록된 자료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 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예정입니다.
6.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요청할 예정입니다.
7. 기타 위원 추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(☎02-6788-3821)으로 문의바랍니다.

「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

제5조(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)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(이하 “건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 1. 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
 2.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
 3. 언론계·시민단체 및 「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」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
 4. 건축·도시·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·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
 5. 국회사무총장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·해촉 및 임기,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「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임기) ① 「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국회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.
 1.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
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(비밀 준수 의무)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,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